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434
----------	-------

발의연월일 : 2026. 3. 12.

발 의 자 : 김정호 · 서왕진 · 이연희  
안태준 · 박 정 · 윤후덕  
전진숙 · 임미애 · 허종식  
이수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인의 대표자는 ‘사업주’가 아닌 ‘상급자’로 분류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또한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그 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난임 시술은 반복적인 의료기관 방문과 호르몬 치료, 시술 전 준비과정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크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급기간이 제한적이어서 근로자가 무급휴가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인의 대표자인 상급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일·가정 양립 환경을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제18조의3제1항 및 제39조제2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사업주”를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본문 중 “2일”을 “4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사업주”를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인 상급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난임치료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를 4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과태료) ① (생략)

②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⑤ (생략)

제3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인 상급자-----  
-----  
-----  
-----.

③ ~ ⑤ (현행과 같음)